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
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4일

임실군의회 의장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임실군의회 공무원 출장비 부당수령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현행 법령 용어 최신화 및 기존 문구 삭제
- 가. 여비의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금액 명확화(안 제5조)
- 나. 타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안 제5조제1항)
- 다. 변경된 규정 명칭 수정(안 제6조제4호)
- 라.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규정 삭제(안 제6조제8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5년 6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2) 전 화: 063-640-2883, 팩스 063-640-2699

3) 전자우편: charity81@korea.kr

4. 개정안: 붙임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외여행**”을 “**국외 출장**”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여비지급구분)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 중 “**국내여행**”을 “**국내 출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임실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제6조제8호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으로, ”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비 부담 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의 출장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의 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u>국외여행</u> 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국외 출장</u> ----- ----- -----.
제3조(여비지급구분) 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 <u>영</u> ”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그 밖에 공무원에 대하여는 <u>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u>	제3조(여비지급구분)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 <u>영</u> ”이라 한다) <u>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u>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u>국내여행</u> 을 할 때 지급하는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 ----- <u>국내 출장</u> ----- ----- ----- --.
제5조(여비 부담 수령시 가산징수) ① · ② (생략) ③ <u>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u>	제5조(여비 부담 수령시 가산징수) ① · 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 -----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 3. (생략)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임실군 공용차량 관리규
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
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 7. (생략)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
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
정”으로, “「공무원보수규
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
령”은 “「지방공무원 임용
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
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
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
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
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
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임실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
로 본다.

5. ~ 7. (현행과 같음)

8. -----
-- “-----

-----.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출장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한 임실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않는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임실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지급구분)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출장을 할 때 지급하는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의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임실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전문개정>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

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 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비 부당 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의 출장부터 적용한다.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원

□ 『공무원 여비 규정』

제31조(가산징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